

가rip신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사실을 자필서명을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인 일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계약조건 알람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피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만일, 그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조건 알람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조건 알람사항)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판매자(로잡민에게) 구두상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조건 알람사항)이란 같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에 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부보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부 가입금액 제한, 일부부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하지 않은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언급금액에서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이자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차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서명보장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언급금액전 보험기간(삼성생명 가입)에 지급계시 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한하여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세액공제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종합소득 금액]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 포함)가 부과되며, 전체 언급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및 연금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 연금저축은 관련세법에 따라 언급계좌와 합산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적용이율 본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계산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단, 적용이율은 저리액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 상품의 요약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혜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도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 단, 본 상품의 저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별도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 예금보 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보안법에 따라 예금저보안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거지급금을 합하여 인정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 유예금보험 이 상품은 유예금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배당금은 언급금납계시 이후에 언급액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단, 언급금납계시시 수령률(기계약소멸시는 수령 가능))
-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차보통이율 :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안내장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에게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삼성생명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문의실 : www.samsunglife.com(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사망비(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가 차감된 일부 금액만 적용이율로 부리됩니다.



우리은행 WOORI BANK

스마트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생명 콜센터 : 1588-3114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우리은행 (2003038016)

준법감시일 2018-1967(EA, 2018-12-21)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터(1588-3114)로 연락주시던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래리 첫 번째
since 1899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B2.6



당당한 인생이 플러스가 되도록

노후준비와 함께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혜택으로
실속있게 준비하세요!



우리은행 WOORI BANK

연금저축의 필요성



01 은퇴 후 최소생활비 198만원, 준비되셨나요?

100세시대, 은퇴 후 30년, 인생의 3분의 1이 노후기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은퇴 후 최소 필요생활비, 월 198만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최소 필요생활비 vs 현재 생활비 (단위 : 만원)

■ 은퇴 후 최소 필요생활비 ■ 현재 생활비



* 출처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

02 노후준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국민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를 준비하기엔 부족한 금액, 해답은 개인연금입니다.



= 약 **161** 만원 부족

03 저금리 시대, 실속에 실속을 더한 상품을 찾고 계신가요?

저금리시대, 수익성과 절세혜택(관련세법 요건 충족시)까지! 실속에 실속을 더한 상품,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 소비자물가추이 — 기준금리추이



* 소비자물가추이 출처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변화(2018년)

* 기준금리추이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추이(2018년)

04 노후준비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연금저축으로 준비하세요!

노후자금과 세액공제 두가지를 한번에!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넉넉한 은퇴자산을 준비할 때입니다.

노후자금 준비 + 목돈 마련 + 세액공제 혜택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오늘은 똑똑하게 세액공제!
내일은 든든하게 노후연금!



* 본 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특징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노후도 준비하면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최대 16.5%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금절감효과

연간 납입보험료 최대 400만원 X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

연간 납입보험료 최대 400만원 X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 **최대 52.8만원 세액공제**
그 외 거주자 및 근로자

연간 납입보험료 최대 300만원 X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 **최대 39.6만원 세액공제**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거주자

*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관련세법 요건 부합시)
*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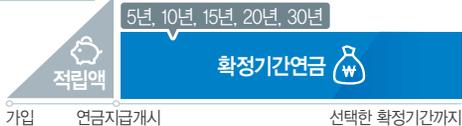
☑️ 연금수령방법 선택가능

생존시까지 연금수령을 원할 경우 종신연금형을, 일정기간동안만 연금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확정기간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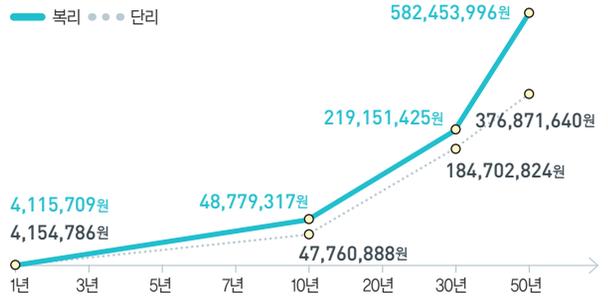
확정기간연금형



☑️ 연복리 운영/최저보증이율 적용

연복리와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은퇴준비를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월 34만원, 4% 가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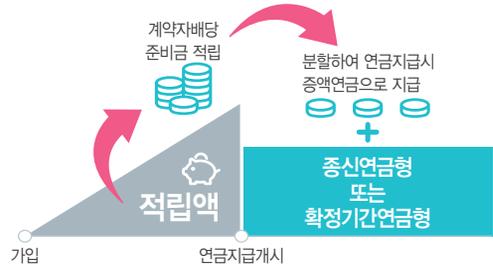


* 예시 수익률은 당사 보험상품의 실제 수익률과는 무관하며 복리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 실제 이율은 변동금리이며, 사법비 차감 후 부리 됩니다.

☑️ 유배당 상품

* 계약자 배당금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기간 중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배당금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적립액이 가산되어 연금지급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전 수령불가, 계약소멸시는 수령가능)



* 상기 도하는 계약자배당금 지급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9페이지 '유배당 상품'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상품특징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안내장의 상세내용,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관련 세제안내

W 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 효과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 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월 납입액 (연간납입액)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세액공제율 13.2%(지방소득세 1.2% 포함)	세액공제율 13.2%(지방소득세 1.2% 포함)
34만원 (408만원)	660,000 원	528,000 원	396,000 원
30만원 (360만원)	594,000 원	475,200 원	396,000 원
25만원 (300만원)	495,000 원	396,000 원	396,000 원
20만원 (240만원)	396,000 원	316,800 원	316,800 원
10만원 (120만원)	198,000 원	158,400 원	158,400 원

W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거주자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1.2%포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연금수령한도^{주1)} 내에서 수령(단, 계약자의 연금수령개시 신청 후 연금수령 가능)

$$\text{주1) 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text{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 \times 120\%}{(11 - \text{연금수령연차})}$$

- * 과세기간개시일은 1)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신청일 기준, 2)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시 연금수령으로 인하여 연금소득세 부과
- * 한도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이 되어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기타소득세율) 적용

W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과세

• 전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① 연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②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나이(만나이 기준)	세 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확정기간연금형 5.5%, 종신연금형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W 연금수령요건 미충족시 과세(연금 외 수령)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포함)과세

* 단, 사망 등 특별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시유발생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청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특별사유 : ① 청탁지연 / ②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에 제한은 받지 않음(세 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 필요(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 계약부활(1회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 납입만으로 부활 가능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면예부수)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

* 단,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적립액이 상기 공제액 합계보다 적은 경우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함
* 계약부활 간소화(1회납 부활) 신청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인입 연금(미납된 보험료와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의 납입기일 및 연정된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 필요)

•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이 연기됨

W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총 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 x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 x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x 10%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기간 및 가입나이	※ A: 연금지급개시나이, M: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5년납	7년납	10년납~납기납
6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	-	0~(A-M)세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0~(A-5)세	0~(A-7)세	-	-
※ 10년납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10년납 이상의 납입기간으로 연장 및 단축가능 (5/7년납의 경우 연장 및 단축 불가, 10년납 이상에서 5/7년납으로의 단축 불가) ※ 전가입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3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연금지급 개시나이	만 55세 ~ 80세(연단위로 선택 가능) ※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가능 ※ 단, 계약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일이 이미 도래한 경우 변경 불가			
연금지급방법	중신연금형(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회), 확정기간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단,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의 경우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 선택가능 ※ 가입시에는 중신연금형만 선택가능. 이후 연금지급계시를 신청할 때 연금형태 변경 가능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월납(당월포함 12개월 선납 가능)			
납입한도	월보험료 6만원 ~ 150만원 ※ 가입안내 내에서 1,000원 단위로 납입 가능			

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사항

-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의 1개월 전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납입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뜻함(승인된 정상계약에 限)
- 보험료 납입한도는 연계계약당일 기준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 합산)
※ 1회성 최저납입한도 : 1만원이상, 천원 단위로 가능
※ 연간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의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일정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가산되어 연금지급에 사용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 가능
-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매월 월계약해당일에서 해당연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 비용(납입유지 관리비용)을 공제
- 단, 보험계약대출 과다 등에 따라 계약유지를 위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때는 납입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이 경우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
 ※ 납입유예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완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계약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연기)
 ※ 1회 신청된 1년, 최고 3회 납입유예신청 가능(보험료 연체시 연체 개월 수 포함)
 ※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기되고 납입기간도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장

연금지급예시

여자 40세, 10년납, 월보험료 34만원, 60세 연금지급개시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에서는 최저보통이율을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중하여 생명보험 상품보험 작성지침에 따라 예시함)이다.
- ※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는 감독관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함이다.
- ※ 최저보통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나 연복리 1.2%, 6년초과 10년(이나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를 말함이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0%는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52%(2018년 12월 기준)중 적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임이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2%는 2018년 12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신연금형 (피보험자 생존시)

보장지급횟수	최저보통이율 기준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52% 지속가정시
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	4,182만원	5,485만원	5,502만원
10회 보증	매년 122 만원씩 지급	매년 224 만원씩 지급	매년 226 만원씩 지급
20회 보증	매년 122 만원씩 지급	매년 223 만원씩 지급	매년 224 만원씩 지급
30회 보증	매년 119 만원씩 지급	매년 218 만원씩 지급	매년 220 만원씩 지급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회 보증	매년 109 만원씩 지급	매년 206 만원씩 지급	매년 207 만원씩 지급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최저보통이율 기준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52% 지속가정시
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	4,182만원	5,485만원	5,502만원
5년형	매년 840 만원씩 지급	매년 1,146 만원씩 지급	매년 1,150 만원씩 지급
10년형	매년 425 만원씩 지급	매년 608 만원씩 지급	매년 610 만원씩 지급
15년형	매년 287 만원씩 지급	매년 430 만원씩 지급	매년 431 만원씩 지급
20년형	매년 218 만원씩 지급	매년 341 만원씩 지급	매년 343 만원씩 지급
30년형	매년 148 만원씩 지급	매년 254 만원씩 지급	매년 255 만원씩 지급

- ※ 가입시에는 중신연금형만 선택 가능. 이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형태 변경 가능
- ※ 연금개시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연기 적립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전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사망당시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적립액은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을 상기에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에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적립액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또한, 실제 적립액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월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보험료 납입유예, 1회 보험료 납입으로 부할 등이 있는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연액도 변동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은 연금지급개시당일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도, 다만 연금연액과 동일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통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중신연금형은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 ※ 중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이 증가해 줄 때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며 됩니다.
- ※ 상기에 예시된 금액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및 배당금 감한이 없는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연금지급액에 관세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금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되는 연금연액은 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 단, 확정기간연금형 20년형의 경우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가능합니다.
- ※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6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이든, 중신연금형은 보증지급횟수(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이든에 따라 보험기간이 보장기간과 동일하며, 보증지급횟수(또는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금연액에 반영되며, 연금연액에 반영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통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재소환시율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 또는 연금지급 종료
- ※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이 경우엔 상속인과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유예대상상품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이차배당기준율로 월단리 연복리 방식으로 적립

배당금 수령방법

- 계약소멸시 : 계약소멸시 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수령시 : 연금지급개시 1년전 연계계약당일까지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10회(단,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5회)로 분할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후 매년 발생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을 지급합니다.
- ※ 계약자 배당금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당시의 적립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최초 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종신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시당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계약소멸사유 : 연금지급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지급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없음
- * 적립액 : 보험료에서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유형)을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 보증지급횟수 중 "100세"란 "10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의 경우 만 50세 이전 가입시에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60세 이후 가입시에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가능합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회)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드립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된 연금 연액의 총합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5, 10, 15, 20, 30년)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 (5, 10, 15, 20,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드립니다.
-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고객센터사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연금연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당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 당시의 경험 연금사당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연금연액 계산시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지급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지급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의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전 1년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변동내역

연월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18.11	'18.12
공시이율	2.46%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 공시이율 변동(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에 따라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여자 40세, 10년납, 월보험료 34만원, 60세 연금지급개시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52% 지속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세후지급예상액	해지환급금	환급률	세후지급예상액	해지환급금	환급률	세후지급예상액
1년	4,080,000	3,625,020	88.8	3,040,090	3,650,620	89.4	3,061,470	3,651,030	89.4	3,061,810
3년	12,240,000	11,439,990	93.4	9,591,990	11,663,210	95.2	9,778,380	11,666,810	95.3	9,781,380
5년	20,400,000	19,450,040	95.3	16,306,780	20,078,390	98.4	16,831,450	20,088,590	98.4	16,839,970
7년	28,560,000	27,541,620	96.4	23,089,650	28,916,530	101.2	24,237,700	28,937,120	101.3	24,254,890
10년	40,800,000	40,138,450	98.3	33,647,610	43,175,440	105.8	36,183,490	43,219,520	105.9	36,220,300
15년	40,800,000	40,969,700	100.4	34,341,700	48,657,260	119.2	40,760,810	48,754,760	119.4	40,842,220
20년	40,800,000	41,821,930	102.5	35,053,310	54,859,430	134.4	45,939,620	55,023,490	134.8	46,076,610

* 이 보험상품은 객관적 외부지표(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인정 증권수익률, 및 "양도성예금 증서 유통수익률"을 혼합한 이율)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일부러'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세후지급 예상액"은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단,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시에는 연금수령년도 이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을 상기에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에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0%는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52%(2018년 12월 기준)중 적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2%는 2018년 12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 또한, 실제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월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가납입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마다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환급금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 상기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려의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에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세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